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485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428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5. 22 선고 2001나7076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689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9 선고 99나32341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AA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BA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AB)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6891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2. 선고 2001나70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광역시음식료품도매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협동조합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외 조합이 발행하고 수혜조합원들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징구하고, 이를 징구할 때에는 각 어음상 배서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면서 수혜조합원들의 각 어음상 배서부분이 본인의 서명날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김CA의 배서를 제외한 나머지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이는 원고가 보증위탁계약 면책기준 소정의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CA의 배서를 제외한 나머지 수혜조합원들의 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혜조합원들이 한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 속에, 소외 조합이 수혜조합원들을 대행하여 배서에 관한 기명날인을 하였고 소외 조합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DADA조합법 소정의 '단체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므로, 위 법에 의해 대출약정의 효력이 소외 조합의 수혜조합원에게 미침으로써 이 사건 어음배서의 진정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구상권을 수혜조합원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적 계약은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단체적 계약의 체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위 계약이 단체적 계약이어서 피고가 수혜조합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어음상 배서가 위조되었다면 스스로 수혜조합원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만큼, 달리 수혜조합원을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비록 수혜조합원들의 어음배서가 진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에는 소외 조합의 이사 전원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어 피고의 동인들에 대한 대출금 전액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증위탁계약 면책기준 소정의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위탁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한 이상 그 면책기준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증위탁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와 별도로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